

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4월 4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4월 4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4. 13) 상정
- 제1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4. 13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회계과장 김 병 전)

□ 제안이유

- 「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제정(조례 제2545호, 2010. 10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사회적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추가로 규정하고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이 일부개정(법률 제10006호, 2010. 2. 4. 공포, 2010. 8. 5.시행)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,
-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가. 사회적기업에 대부하는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신설함(안 제28조제3항 제5호): 1,000분의 25

나. 사용료·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최소금액을 높임
(안 제35조 및 제63조)

: 50만원 초과 → 100만원 초과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속기록 참고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사회적기업이 본사를 부천에 두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지?</p> <p>○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세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 주된 목적이 아닌지 또는 본사가 부천에 소재하지 아니하더라도 1000분의 25로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?</p>	<p>○ 없음.</p> <p>○ 본사를 부천에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“「건축법」 제49조제1항”을 “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3항제3호 본문 중 “주거용건물(「건축법」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연 1,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”를 “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.”로 하고, 단서 규정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부천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회적기업·예비사회적기업 및 부천형사회적기업에 대부하는 경우. 다만, 본사를 부천시에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1,000분의 35 이상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이하 이 조에서 “대부료등”이라 한다”를 “이하 “대부료등”이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“재정경제부장관”을 “기획재정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33조제4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제38조제1항제2호 중 “교육청”을 각각 “교육지원청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·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1,500제곱미터 이하,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3,000제곱미터 이하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사람이 소유한 건물로 점유·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(특별시·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, 시의 동 지역은 5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)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할 때. 다만, 5세대 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된 토지로 시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특별시·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하는 1,500제곱미터 초과,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3,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위 매각 범위에서 나누어 매각할 수 있으며, 분할매각 후 남아 있는 토지가 「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,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남아있는 토지까지 함께 매각할 수 있다.

제40조제1항제5호 중 “제1호의 규모에”를 “특별시·광역시의 동 지역은 300제곱미터 이하, 시의 동지역은 500제곱미터 이하에”로 한다.

제41조 본문 중 “경우에 있어서”를 “경우”로 하고, “임대형 토지신탁과 분

양형 토지신탁”을 “임대형 토지신탁·분양형 토지신탁·혼합형 토지신탁”
으로 한다.

제6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